

범죄교정 칼럼 : 미결수용자(수형자) 검찰소환 폐지

✎ 김신호 기자 | ⓒ 승인 2022.10.14 17:15

인권실현은 국가의 책무

미결수용자(수형자) 검찰소환 폐지

▶인권 실현은 국가의 책무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의 검찰만 누리고 있는 '구속피의자·미결수용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28일은 제77주년 '교정(矯正)의 날'이다. 교정의 날을 맞아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된 범죄수용자(수형자)의 '인권보호' 및 '검찰소환 출정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의 검찰만 누리고 있는 '구속피의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한국의 경찰이나 외국의 검사들 처럼, 한국의 검사들도 구치소를 방문해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나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법학자들은 "기소되면 피고와 검사는 당사자이다. 추가수사를 위해 피고인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으며, 교도관은 시설에서 보호중인 수형자인 피고인에게 검찰 출정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구속된 피의자가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로 불러 다니는 TV뉴스를 어린시절부터 익숙하게 보아 왔다. TV뉴스에서 구속피의자는 포승(밧줄)과 수갑을 찬 채 민원인들이 즐비한 검찰청 마당과 복도를 거쳐 검사실로 오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출정조사(=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교도관 2~3명과 함께 출장을 나오는 것)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어디서나 비슷할 것으로 오해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일단 교정기관(구치소, 교도소)에 범죄피의자가 수용된 이후엔 밧줄에 묶여 검사실로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는 나라는 없다. 검사가 구치소를 찾아가 구속된 피의자를 추가 수사한다. 이 점은 한국의 경찰도 동일하다. 한국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한다.

▶한국의 검찰만 유일하게 수사상의 특혜를 받는 셈이다. 교정기관 입장에서도 불만이다. 교정기관이 구치소의 수형자를 검찰청에 보내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을 겪어야 한다. 일단 수형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손목과 허리를 밧줄로 묶는다. '연승'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는 포승을 채운다. 버스에 태운 다음에는 교도관들이 계호(경계해 지킴)를 하며 검찰청까지 가야 한다.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굴비 두름 엮듯 묶인 채로 검찰청에 끌려다니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욕적이고,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실무 인력을 잔뜩 투입해야 하는 번잡한 일이지만 매일 반복된다.

가끔 검찰의 요청으로 수형자의 인권이 '특혜성'으로 보호되는 사례도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소환 조사를 받을 때다. 지난 2019년 1월 25일 오전 10시반쯤 수의 대신 흰셔츠에 검정색 코트를 입은 양 전 대법원장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반 수형자들과는 따로 호송됐고, 수갑도 차지 않았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도 출정조사 자체를 면하지는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교정과 관련된 검찰개혁안 중 '공개소환 포토라인 폐지', '심야조사 폐지', '구치소에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했을 때 수갑찬 모습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치' 등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정착 시켰다. 해묵은 과제를 푼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피의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제도의 폐지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검사의 출장조사에 드는 시간 등 검찰시스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구치소가 검찰청과 붙어 있는 경우는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을 지 모르나, 구치소와 검찰청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검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일선 교도관들은 "타 수사기관이나 외국의 사례처럼 검사들도 구치소로 출장조사를 나오는 게 정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조준현 성심여대 명예교수 등은 "검사의 접견수사는 검사의 수사시간과 인력부족난을 야기해, 제3의 다른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검찰의 몫으로 봐야 한다"며"외국은 검사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불구속 수사원칙이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등 검찰 스스로 많은 연구를 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9년 열린 제57회 한국교정학회추계공동학술대회 '수용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폐지와 의료처우 개선' 관련 세미나에서 "기소됐을 때,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당사자이다. 이같은 기소단계에서는 피고인이 거부하면 출정조사를 안가도 될 수 있다. 또한 교도관은 검사의 요구를 수행자인 피고인에게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검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교도관은 호송 안하면 된다. 이는 교도관들의 정당한 법집행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이미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도관들은 검찰 등 다른 기관을 탓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정학회(회장 최응렬, 당시 회장 이영근)는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미결수용자 검찰소환 조사제도 폐지'를 대통령과 검찰총장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국의 '구속피의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관행은 1948년 정부수립 초기부터 검사들이 교정기관의 최고책임자(형정국장, 교정국장)를 맡아왔기 때문에 정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번 정착된 이 관행은 교정의 최고책임자가 1999년 부터 검사에서 교도관으로 바뀐 뒤에도 쉽게 변경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이 있다. 교정본부 산하에는 4개 지방교정청, 53개 구치소·교도소에 1만6000명 교도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만5000여명의 수용자(수형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구치소·교도소와 검찰청 사이를 피의자를 호송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규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조차 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출정 관행을 중단할 국민여론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가 교도관들 사이에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의 현대교정기관 역사는 1948년 9월 13일 법무부 형정국 설치로 출발 했다. 형정국장은 '이사관'이었는데, 1948년 초대 최병석 형정국장 부터, 1962년 8대 이봉성 교정국장, 1999년 31대 김경한 교정국장 까지 모두 검사들이 맡아 왔다. 최초의 교정직 출신 교정국장은 32대 이순길(1999~2001) 국장 부터 시작됐고, 현재 신용해 교정본부장 까지 23년째 교정직 출신이 교정국장(2007년부터 교정본부장)을 맡고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 당시 정권 차원의 강력한 의지로 교정국장이 처음으로 교도관 출신이 임명되었고, 이후 검사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교정본부)는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04년 교정보호청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 19대 국회의 이명수 의원, 20대 국회에서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교정 전문화·선진화를 위해 독립 외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한국교정학회는 수년간 포럼을 열고 '교정청 설립'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오는 28일 제77주년 교정의 날을 앞두고, "인권 실현은 국가의 책무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의 검찰만 누리고 있는 '구속피의자·미결수용자의 검찰청 소환조사'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보길 기대한다.



김신희 기자 kknews@empas.com

저작권자 © 뉴스코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